

2018년도 (재)달성복지재단 출연금 출연 계획(안)

의안 번호	1469
----------	------

제출일자 : 2017. 11.

제출자 : 달성군수



1. 제안이유

- 2018년도 대구광역시 달성군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의거 미리 대구광역시 달성군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달성복지재단 운영비 출연 : 530백만원
 - 군민의 다양한 복지수요에 부응하고 복지서비스의 전문성 증진을 위해 달성복지재단의 운영 및 사업수행을 위한 출연금 교부
 - 모금 및 배분사업, 사회복지 프로그램 지원사업 등 군민에게 내실 있는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
 - 설립 10주년 기념행사 및 노인복지관, 국공립어린이집 등 23개 수탁시설 복지 종사자의 자질 향상 프로그램 등을 운영

- 붙임 1. 출연심의 요구서 1부
2. 사업부서 검토의견서 1부
3. 출연기관 현황 1부. 끝.

출연 심의요구서

출 연 대 상	○ 기관명 : 재단법인 달성복지재단 ○ 대 표 : 서정길(비영리 공익법인, 2008. 10. 15 설립) ○ 일반현황 - 소 재 지 : 대구광역시 달성군 논공읍 달성군청로 33 - 기본자산 : 20억원(달성군 출연금) - 주요사업 · 시설운영 : 노인복지관, 국공립어린이집 등 23개 수탁시설 · 모금사업 : 기부문화 및 기업사회공헌 활성화, 나눔 캠페인 · 배분사업 : 지정·결연 후원, 주거환경개선 등 저소득 가정 지원 · 기획사업 : 미래세대지원사업, 희망운동화 지원사업 등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출 연 사업비	○ 출연 예정금액 : 530백만원(군비) ○ 예산편성 요구 예정사항 <table><tr><th rowspan="2">구 분</th><th rowspan="2">사업 기간</th><th rowspan="2">2017년 예산액</th><th rowspan="2">2018년 요구액</th><th colspan="5">재 원 별</th></tr><tr><th>계</th><th>국비</th><th>시비</th><th>군비</th><th>기타</th></tr><tr><td>인건비</td><td>2018.01.01~12.31</td><td>261</td><td>308</td><td>308</td><td></td><td></td><td>308</td><td></td></tr><tr><td>경비</td><td>2018.01.01~12.31</td><td>150</td><td>144</td><td>144</td><td></td><td></td><td>144</td><td></td></tr><tr><td>시설지원사업</td><td>2018.01.01~12.31</td><td>54</td><td>58</td><td>58</td><td></td><td></td><td>58</td><td></td></tr><tr><td>10주년행사</td><td>2018.01.01~12.31</td><td>0</td><td>20</td><td>20</td><td></td><td></td><td>20</td><td></td></tr></table>	구 분	사업 기간	2017년 예산액	2018년 요구액	재 원 별					계	국비	시비	군비	기타	인건비	2018.01.01~12.31	261	308	308			308		경비	2018.01.01~12.31	150	144	144			144		시설지원사업	2018.01.01~12.31	54	58	58			58		10주년행사	2018.01.01~12.31	0	20	20			20	
구 분	사업 기간					2017년 예산액	2018년 요구액	재 원 별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	계	국비	시비	군비			기타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인건비	2018.01.01~12.31	261	308	308			308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경비	2018.01.01~12.31	150	144	144			144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시설지원사업	2018.01.01~12.31	54	58	58			58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10주년행사	2018.01.01~12.31	0	20	20			20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출 연 필요성	○ 군민의 다양한 복지수요에 부응하고 복지서비스의 전문성 증진을 위해 달성복지재단의 운영 및 사업수행 출연금 교부 - 모금 및 배분사업, 저소득층 지원 기획사업 등 수행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근거법령	○ 지방자치단체 출자·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- 제20조(재정 지원) ○ 대구광역시 달성군 재단법인 달성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- 제11조(출연금 교부)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
사업부서의 견 (총평)	○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정책목표와 군정에 대한 실질적인 기여 등 재단설립 취지에 부합되게 운영되고 있음 ○ 재단설립 10주년을 맞이하여 창립기념 세미나 및 기념식, 전국 기초자치단체복지재단 워크숍 유치 등의 10주년 기념행사를 계획하고 있으며, ○ 또한 모금 및 배분사업, 사회복지 프로그램 지원사업 등 군민에게 내실있는 맞춤형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○ 지역 주민의 복지욕구 다양화에 부응하는 맞춤형 복지 프로그램 개발 및 노인복지관, 국공립어린이집 등 23개 수탁시설 복지 종사자 자질향상 프로그램 운영 등 복지재단 설립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출연금을 교부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
-------------------------	--

사업부서 검토의견서

1. 경영평가 및 외부기관 지적사항

- 경영평가 : 경영평가 제외대상기관
 - 운영출연금 : 3년 평균 지원금 5억 미만
 - 법인 사무국 상시인력 : 10인 미만

2. 출연금 예산요구액 부서 의견

- 2018년 출연금 530백만원 교부로 재단 운영 및 목적사업 수행
 - 수탁시설 증가에 따른 관리인력 증원 등으로 인건비 증가
 - 설립 10주년 기념행사 및 시설지원사업 등 사업비 증액

3. 출연금 검토 상세 내역

(단위 : 백만원)

구 분	2016년 결산액	2017년 예산액(최종) (A)	2018년 예산(안)			
			기관 요구액(B)	부서 검토액(C)	증감 (C-B)	전년대비 증감액(C-A)
총 계	383	465	530	530	0	65
인건비	225	261	308	308	0	47
경비	124	150	144	144	0	▲6
시설지원	10	54	58	58	0	4
자산취득	24	0	0	0	0	0
10주년 행사	0	0	20	20	0	20

출연기관 현황

기 관 명	재단법인 달성복지재단				전화번호	617-9200	
					홈페이지	www.dswelfare.kr	
설립근거	법 률 : 민법, 공익법인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조 례 : 대구광역시 달성군 재단법인 달성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						
주요연혁	설립연도 : 2008.10.15						
임원 (15.9.1 현 재)	직책	성명	주요경력			임기	
	대표이사 (비상임)	서정길	前달성군 안전행정국장			2016.10.28~2018.10.27	
	비상임이사	김병용	대한노인회 달성군지회장			2016.10.28~2018.10.27	
	비상임이사	김성제	달성군자연보호협의회회장			2016.10.28~2018.10.27	
	비상임이사	김용범	영진전문대학 사회복지과 교수			2016.10.28~2018.10.27	
	비상임이사	김태호	큰나무집 식당 대표			2016.10.28~2018.10.27	
	비상임이사	진덕수	덕수복지재단 이사장			2016.10.28~2018.10.27	
	비상임이사	전영희	가창어린이집 원장			2016.10.28~2018.10.27	
	비상임이사	김상근	수경복지재단 이사장			2016.10.28~2018.10.27	
	비상임이사	장창식	前달성군청소년센터관장			2016.10.28~2018.10.27	
	비상임이사	이은진	계명문화대학 유아교육과 교수			2016.10.28~2018.10.27	
	비상임감사	김대근	김대근세무사사무소 대표			2016.10.28~2018.10.27	
	비상임감사	김광환	달성군종합사회복지관 관장			2016.10.28~2018.10.27	
주요기능	○ 군민의 다양한 복지수요에 부응하고 복지 서비스의 전문성을 증진하여 내실 있는 사회복지서비스 제공 ○ 복지자원 발굴 및 저소득층 지원사업 ○ 복지 프로그램개발 사업 ○ 복지시설 간 협력 지원 ○ 올바른 기부문화 정착사업 ○ 복지시설 위수탁 사업						
최근3년간 예산현황	연 도	2015년	2016년	2017년	재무현황 2016.12.31 기준	자산	2,429백만원
	예산액	1,069 백만원	1,077 백만원	1,124 백만원		부채	0.1 백만원
	지자체 지원액	285 백만원	383 백만원	465 백만원		자본	2,429백만원

□ 「민법」

제32조(비영리법인의 설립과 허가) 학술, 종교, 자선, 기예, 사교 기타 영리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이를 법인으로 할 수 있다.

□ 「공익법인의 설립·운영에 관한 법률」

제2조(적용 범위) 이 법은 재단법인이나 사단법인으로서 사회 일반의 이익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학자금·장학금 또는 연구비의 보조나 지급, 학술, 자선(慈善)에 관한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(이하 "공익법인"이라 한다)에 대하여 적용한다.

□ 「지방자치단체 출자·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

제4조(지방자치단체의 출자·출연과 대상 사업 등) ①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자본금 또는 재산의 전액을 출자 또는 출연하거나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(외국인 및 외국법인을 포함한다)와 공동으로 출자하거나 출연하여 「상법」에 따른 주식회사나 민법」 또는 「공익법인의 설립·운영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재단법인을 설립 할 수 있다.

1. 문화, 예술, 장학(장학), 체육, 의료 등의 분야에서 주민의 복리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사업

③ 출자·출연 기관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

1. 설립 목적
2. 주요 업무와 사업
3. 출자 또는 출연의 근거와 방법
4. 그 밖에 기관의 운영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

제20조(재정 지원) ① 지방자치단체는 제4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출자·출연 기관에 출자금·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.

③ 출자금·출연금 또는 보조금의 교부·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□ 「대구광역시 달성군 재단법인 달성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

제5조 (기본재산의 조성) 재단의 기본재산은 대구광역시 달성군(이하 "달성군"이라 한다)의 출연금 및 기타 수입금으로 조성한다.

제11조 (출연금 교부) 군수는 재단의 설립·운영 및 사업수행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재단에 출연금을 교부할 수 있다.

예 산 내 역

● 인건비 : 308백만원

① 어린이집 및 수탁시설 증가에 따른 인력 증원

인원	인건비	비고
1명	38백만원	경력직

② 법인사무국 직원 2018년도 인건비 상승분

인원	인건비 증가분	비고
5명	9백만원	2017년 대비 4%

● 경비 : 144백만원

- 사무관리비용, 교육훈련비, 기금마련 및 홍보사업 등

● 시설지원사업 : 58백만원

- 시설지원사업 : 수탁시설연합행사, 국공립어린이집 연합운동회 등
 - 수탁시설지원사업 : 수탁시설 전출금 등

● 설립 10주년 행사 : 20백만원

- 설립 10주년 기념식, 기초자치단체설립복지재단 협의회 워크숍 유치